

부패행위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

주관부서: 준법지원팀

2021. 12. 13. 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LG 화학(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 모두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정부 기관에 속하여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선출 또는 선임된 임직원(직급 불문),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 및 사법 기구 구성원 그리고 사무직을 비롯한 행정 기관의 하급 직원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국·공립 및 사립 불문)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② “외국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3.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과반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4.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기타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 ③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기부, 후원,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④ “부정한 청탁”이란 공직자등 및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에 위반되거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조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준수)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적용 가능한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상기 법령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 ② 임직원은 본 규정 및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제 5조 (부정한 청탁의 금지)

- ① 임직원은 공직자등 및 외국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 및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그에 수반하여 금품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
- ②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인 공직자등, 외국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공공성에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이는 금지된다.
- ③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 또는 공공성에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법무실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6조 (금품등의 제공 금지)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또는 외국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어떠한 금품등도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규정된 허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등이 제공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무실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7조 (제 3자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준수 등)

- ① 협력사, 컨설턴트, Agent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임직원(이하 본조에서 “담당 임직원”이라 한다)은 회사가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중 일부나 전체가 제 3 자에 의해 공직자등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로 제안, 약속되거나 제공될 것임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담당 임직원은 제 3 자에 대한 사전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준법지원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 3 자와의 관계, 체결하려는 계약의 내용,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실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담당 임직원은 제 3 자가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계약에 반영하고,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조사 권한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합의 결과를 준법지원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거래의 성격, 협상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한 다음의 위험신호가 발견되거나 관련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준법지원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3자가 공직자등 또는 외국공무원의 요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 2. 제3자가 공직자등 또는 외국공무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거나, 이를 스스로 밝히거나 암시한 경우
 - 3. 제3자에게 시장가격, 업계 관행, 또는 자사 내부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4. 제3자 중 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의법인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5. 제3자가 자신이 기반을 둔 국가와는 다른 국가의 은행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실제 수행한 업무와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지급 방식을 요청한 경우
 - 6. 제3자가 출처를 알 수 없거나 확보 경로가 불분명한 비공개 자료의 제공을 제안한 경우
 - 7. 제3자가 계약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인허가 등), 경험 또는 자원(설비, 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8. 그 외 계약상대방의 잠재적인 법령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부정적인 평판 포함)
- ⑤ 준법지원팀은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통지 내용에 기초하여 제 3 자에 의한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검토하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보고를 받은 준법지원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 자에 대한 추가적인 실사, 별도의 부패방지조치 등을 담당 임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 3 자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 또는 경영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조 (위험성 평가)

- ① 준법지원팀은 임직원과 제 3 자가 본 규정 및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지원팀이 위 조사 및 점검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 9조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례가 있거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교육 실시 현황(일자, 참가자 등)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 년 동안 보관한다.

제 10조 (신고)

- ① 본 규정의 위반행위나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준법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 1 항의 신고시 직접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compliance@lgchem.com) 등의 제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준법지원팀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준법지원인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고를 받은 준법지원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을 해당 부서 담당임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제안,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조 (징계 및 책임)

- ① 임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준법지원인의 징계 요구 및 징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이 그의 부하 직원에게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신의 부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12조 (세부사항)

회사는 본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